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·유지·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395호, 2020.6.9. 일부개정, 2020.12.10. 시행)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임시소방시설을 설치·유지·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함(안 별표 10)

- 1) 임시소방시설을 설치·유지·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과태료 부과
 -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·유지·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7. 22. ~ 9. 1.)

3) 행정규제 : 규제 해당없음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0 제2호에 위반행위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·유지·관리하지 아 니한 경우	법 제53조제1 항제3호	300
--	------------------	-----

별표 10 제2호 위반행위 다목 및 위반행위 라목을 각각 위반행위 다목
및 위반행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사목부터 위반행위 파목
까지 및 위반행위 하목부터 위반행위 리목까지를 각각 위반행위 사목부
터 위반행위 파목까지 및 위반행위 하목부터 위반행위 리목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0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
후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·유지·관리
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522